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지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검토 및 조사를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, 비용분석항목 및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

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-4-1.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설계도서 검토 및 육안조사 실시를 위해
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3-3-1., 3-3-2., 3-3-4.(1) 중 “사생활침해”를 “층간소음”으로 한다.

3-5-3.(2) 중 “신축공사비”를 “신축공사비, 유지관리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2-4-1. 현지조사는 정밀한 계측을 하지 않고, 매뉴얼에 따라 설계도서 검토와 육안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자의 의견을 서식 1부터 서식 4까지의 현지조사표에 기술한다. <후단 신설>	2-4-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이 경우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설계도서 검토 및 육안조사 실시를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3-3-1. 주거환경 분야는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하고, 조사결과에 항목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성능점수를 산정한 후, A~E등급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. 이 경우 도시미관, 소방활동의 용이성, 침수피해 가능성, 세대당 주차대수, 일조환경,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은 단지전체에 대해 조사하고, 소방활동의 용이성, 일조환경은 단지전체 뿐 아니라 표본 동을 선정하여 평가한다. 또한, <u>사생활침해</u>, 에너지효율성, 실내생활공간의	3-3-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충간소음</u>, -----

적정성은 단지, 동뿐만 아니라 표본 세대를 선정하여 평가한 다.	----- ----- --.
3-3-2. 주거환경 평가는 도시미 관, 소방활동의 용이성, 침수피 해 가능성, 세대당 주차대수, <u>일 조환경 사생활침해</u>, 에너지효율 성,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, 실내생활공간의 적정성 등 9개 의 항목에 대하여 조사·평가 한다.	3-3-2. ----- ----- ----- <u>일</u> <u>조환경, 층간소음</u>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3-3-4. 성능점수 산정 (1) 주거환경 평가 성능점수는 도시미관, 소방활동의 용이성, 침수피해 가능성, 세대당 주차 대수, 일조환경, <u>사생활침해</u>, 에 너지효율성,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, 실내생활공간의 적정 성에 대한 성능평가 점수와 해 당 항목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.	3-3-4. 성능점수 산정 (1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층간소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3-5-3. 개·보수비용과 재건축 비 용을 산정한다. (2) 재건축 비용은 기존 건축물 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	3-5-3. 개·보수비용과 재건축 비 용을 산정한다. (2) ----- ----- -----

으로 철거공사비와 건축물 <u>신</u> <u>축공사비</u>, 재건축 공사기간 중 의 이주비용 등을 포함한다.	----- <u>신축</u> <u>공사비, 유지관리비</u>----- -----.
---	--